

[별표]

## 위임전결사항 및 전결권자(제4조제1항 관련)

일련 번호	업 무 구 분	담당	과장 팀장	심의관	국장	상임 위원	위원장 (행심위원장)
1	인사 및 위원회 운영 등	위원장 직무대행자 지정 (법 제8조제2항)	기안				결재
		위원의 임면요청 (법 제8조제4항)	기안				결재
		안건검토위원 지정 (영 제4조제2항)	기안				결재
		위원회의 소집 및 참석위원 지정 (법 제8조제5항, 영 제4조제3항)	기안				결재
		소위원회 소집, 소위원회 참석위원 지정 (법 제8조제6항, 영 제7조제2항)	기안				결재
		소위원회의 위원장 지정 (영 제7조제1항)	기안				결재
		전문위원회 소집, 전문위원회 참석위원 지정 (법 제8조제8항 및 제9항, 영 제8조)	기안				결재
		전문위원회의 위원장 지정 (법 제8조제8항 및 제9항, 영 제8조)	기안				결재
		전문위원회의 회부 사건 지정 (법 제8조제8항 및 제9항, 영 제8조)	기안				결재
		위원(직원을 포함한다)의 제척·기피 및 회피신청에 대한 결정 (법 제10조제1항 및 제5항부터 제7항까지)	기안				결재
		회의록 작성 (영 제28조)	기안	전결			
2	심판 청구 등	행정심판청구서의 선람	기안	전결			
		행정심판청구서의 이송	기안	전결			
		피청구인에 대한 답변서 제출요구여부 결정 (법 제24조제3항)	기안	전결			
		청구사건의 검토담당자 지정	기안	전결			
		대표자 선정 권고(법 제15조제2항, 영 제43조제1호)	기안				전결

일련 번호	업 무 구 분	담당	과장 팀장	심의관	국장	상임 위원	위원장 (행삼위원장)
	대리인 선임 허가(법 제18조제1항 제5호, 영 제43조제4호)	기안				전결	
	국선대리인 선정여부의 결정(법 제18조의2제2항, 영 제43조제4호의2)	기안	전결				
	국선대리인 선정여부의 통지(법 제18조의2제2항, 영 제43조제4호의2)	기안	전결				
	국선대리인의 선정 취소 (법 제18조의2제3항, 영 제16조의4제1항)	기안	전결				
	국선대리인의 사임 허가(법 제18조의2제3항, 영 제16조의4제2항)	기안	전결				
	국선대리인의 재선정 결정(법 제18조의2제3항, 영 제16조의4제3항)	기안	전결				
	국선대리인의 보수 지급 (법 제18조의2제3항, 영 제16조의5제1항)	세 부 기 준 마 련	기안				결재
보수지급액 결정 및 보수지급		기안	전결				
	국선대리인 예정자 위촉 및 명부확정 (법 제18조의2제3항, 영 제16조의6제1항, 제3항)	기안					결재
	청구인지위 승계 허가 (법 제16조제5항, 영 제43조제2호)	기안				전결	
	피청구인 경정 결정 (법 제17조제2항, 영 제15조제2항 및 제43조제3호)	운전사건	기안	전결			
		그 외 사건	기안			전결	
	피청구인 경정사실의 통보 (법 제17조제3항)	기안	전결				
	제3자 또는 제3행정청의 심판참가 허가 및 요구 (법 제20조제5항 및 제21조제1항, 영 제43조제5호)	기안				전결	
	청구취지·청구이유의 변경허가 (법 제29조제6항, 영 제43조제6호)	기안				전결	
	변경허가사실의 다른 당사자에의 송달 (법 제29조제6항)	기안	전결				
	집행정지 직권 결정 및 직권취소 결정 (법 제30조 제2항, 제4항 및 제6항)	기안					결재

일련 번호	업 무 구 분	담당	과장 팀장	심의관	국장	상임 위원	위원장 (행삼위원장)
	당사자에게 집행정지결정서 송달 (법 제30조제7항)	기안	전결				
	임시처분 직권 결정 및 직권취소 결정 (법 제31조 제1항 및 제2항)	기안					결재
	당사자에게 임시처분결정서 송달 (법 제31조제2항)	기안	전결				
3	심리 등	제3자 심판참가 요구사실의 통지 (영 제18조)	기안	전결			
	심판청구의 보정요구 (법 제32조제1항, 영 제24조제1항 및 제43조제7호)	기안	전결				
	심판청구의 보정 미요구 결정 (법 제32조의2)	기안	전결				
	보정서 부분의 다른 당사자에게 송달 (법 제32조제3항)	기안	전결				
	심판청구의 직권보정 (법 제32조제1항 단서, 영 제43조제7호)	기안	전결				
	직권보정 사실의 당사자에게 통지 (영 제24조제2항)	기안	전결				
	답변서·보충서면 및 증거서류 등의 송 달(법 제34조)	기안	전결				
	심리기일의 결정 (법 제38조제1항, 제2항))	기안					결재
	심리기일의 통지 (법 제38조제3항)	기안	전결				
	심리지연 통보	기안	전결				
	심리연기요청서의 수리	기안	전결				
	심리방식의 결정(법 제40조제1항 본문)	기안					결재
	구술심리의 허가 결정 (법 제40조제1항 단서, 영 제43조제8호)	기안					결재
	구술심리의 결정 통지 (법 제40조 제2항 및 제3항)	기안	전결				
	증거조사신청의 허가 결정 (법 제36조제1항, 영 제25조제1항)	기안	전결				
	증거조사신청의 허가 결정의 통지	기안	전결				
	증거조사를 위한 당사자·참고인 심 문결정, 증거자료의 제출요구 (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기안	전결				
	증거조사를 위한 감정요구, 전문가 조회 및 검증(법 제36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기안	전결				

일련 번호	업 무 구 분	담당	과장 팀장	심의관	국장	상임 위원	위원장 (행심위원장)
	증거조사 결과의 보고 (영 제25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기안	전결				
	다른 행정기관에의 증거조사 촉탁 (법 제36조제2항)	기안	전결				
	관계 행정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및 의 견진술 요구 (법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기안	전결				
	심판청구·심판참가 취하서 수리 (법 제42조)	기안	전결				
	피청구인에게 취하서 송부	기안	전결				
	증거자료 반환 (법 제55조, 영 제41조)	기안	전결				
4	재결	재결서의 확정	기안				결재
	재결의 경정 (영 제31조제1항)	기안					결재
	재결서 및 재결경정서의 송달 (법 제48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영 제31조제2항)	기안	전결				
	간접강제 신청서, 간접강제결정 변경 신청서의 상대방 송달 및 의견조회 (법 제50조의2제3항, 영 제33조의2제2 항, 제3항)	기안	전결				
	당사자에게 간접강제결정서, 간접강제 결정 변경결정서의 송달 (영 제33조의2제4항)	기안	전결				
	집행문 및 승계집행문 부여명령 (법 제50조의2제5항)	기안					결재
	집행문 및 승계집행문 부여 (법 제50조의2제5항)	기안	전결				
	조정 개시결정 (영 제43조제9호, 영 제30조의2제1항 전단)	기안				전결	
	조정회의의 주재자 지정 (영 제30조의2제3항)	기안					결재
5	법령정 비 및 행정기 관지도	행정기관에 대한 행정심판운영현황 조사·지도(법 제60조제1항)	기안			전결	
	불합리한 법령에 대한 위원회의 시 정요청(법 제59조제1항)	기안				전결	
6	기타 위 원회 관 련 업무	중요사항	기안			전결	
		경미사항	기안	전결			